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7 선고 2020가합496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이근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주

변 론 종 결 2021. 7. 13.

판 결 선 고 2021. 8. 17.

##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의 2019. 10. 10.자 48,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11. 4.자 1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11. 7.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2019. 11. 25.자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중 17,607,456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5,607,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 2항 또는 C과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2019. 10. 16.

채권양도계약은 245,607,45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607,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E, C을 상대로 2015년경 이 법원 2015가합20648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사자들 사이에 2016. 12. 23. “D, E,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1. 31.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8타채11160호로 C의 주식회사 F(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G은행, H은행, I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11. 13.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C은 2018. 11. 2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9. 3. 26.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에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되었고, 원고가 이를 통지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라1136 결정).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9카명1077호로 재산명시를 신청하였고, 2019. 10. 10.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다. C은 2019. 10. 15. 위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았다.

마. C은 2019. 10. 9. J에게 자기 소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하남시 K아파트 L호(이하 'K아파트'라 한다)를 48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48,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432,000,000원은 2019. 10. 24.에 지급받기로 정하였고, J으로부터 위 계약금을 자신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바. C의 처인 피고는 2019. 10. 10. M으로부터 M 소유의 하남시 N아파트 O호(이하 'N아파트'라 한다)를 계약금 48,000,000원, 중도금 150,000,000원, 잔금 384,000,000원 합계 58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C은 같은 날 위 마.항 기재 I은행 계좌에서 48,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M의 처이자 대리인인 P에게 위 수표를 N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사. C은 2019. 10. 14. 중개인을 통해 J에게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하기 위하여 대출이 필요한데 자신이 무주택일 필요가 있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인 10. 24.보다 앞선 2019. 10. 16. 중도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받아 K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말소한 다음 K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다만, 새로 구입한 집의 소유자 사정으로 2019. 10. 24. 이사 갈 수 없으니,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사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였고, J은 이를 수락하였다.

아. C은 2019. 10. 16. J으로부터 위 중도금 110,000,000원을 받고 K아파트에 관하여 Q 명의 가등기를 말소한 다음, 2019. 10. 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9. 10. 17. 위 110,000,000원 중 100,000,000원으로 G은행에 대한 근저당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자. 한편 C은 N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까지 K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2019. 10. 16. J과 사이에 임차인을 자신이 아닌 피고로 하고, 잔여 매매대금 322,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위 돈 중 190,000,000원은 기존 잔금일인 2019. 10. 24. 지급하고, 132,000,000원은 이사일에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은 2019. 12. 13.까지로 정한 일시적 임대차계약을 위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차. C은 2019. 10. 19. 재산명시명령에 응하여 재산목록에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한 부동산’으로 ‘K아파트’를,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로 ‘부원주류 급여

2,000,000원'만을 기재한 다음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카. J은 2019. 10. 24. K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H은행으로부터 192,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R)과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9장(수표번호: S~T)을 발행하여 C에게 위 자.항 기재와 같이 매매잔대금 일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후 위 돈의 구체적인 흐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금액           | 돈의 흐름                                                          |                             |                                        |
|--------------|----------------------------------------------------------------|-----------------------------|----------------------------------------|
| 100,000,000원 | 2019. 10. 24.<br>100,000,000원 자기앞수표 1장<br>(수표번호:R)이 U의 계좌로 입금됨 | 2019. 11. 4.<br>U이 피고에게 송금함 | 2019. 11. 4.<br>피고가 P에게 N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으로 |
| 50,000,000원  | 2019. 10. 24.<br>10,000,000원 자기앞수표 5장                          | 2019. 11. 4.<br>Q이 피고에게 송금  | 150,000,000원을 송                        |

|             |                                                               |                                     |    |
|-------------|---------------------------------------------------------------|-------------------------------------|----|
|             | (수표번호:V~T)이 Q의 계좌로 입금됨                                        | 함                                   | 금함 |
| 30,000,000원 | 2019. 10. 24.<br>10,000,000원 자기앞수표 3장<br>(수표번호:W~X)이 피고에게 교부됨 | 2019. 11. 7.<br>위 수표 3장이 피고 계좌로 입금됨 |    |
| 10,000,000원 | 일자 불상경 10,000,000원짜리 H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S)이 Y 계좌로 입금됨       |                                     |    |

타. C은 2019. 11. 25. J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포함한 매매잔금 132,000,000원을 지급받고, J과 사이에 매매대금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P에게 위 수표를 포함한 N아파트에 대한 잔금 384,000,000원을 지급하고, N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파. 원고는 2019. 12. 27. J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19가단22707호로 J과 C 사이의 K아파트에 관한 2019. 10. 9.자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15. 피고가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 한편, C은 일자 불상경 앞서 본 이 법원 2018타채11160호 강제집행절차에서 6,100,928원을 공탁하였는데, 원고는 2020. 8. 28. 위 공탁금에 대한 이 법원 Z 배당절차에서 위 공탁금과 이자 28,557원 합계 6,129,485원 중 4,440,48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단체에 대한 2021. 2. 24.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2021. 1. 12.자, 2021. 2. 1.자, 2021. 2. 24.자, H은행 및 IBK 기업은행에 대한 각 2021. 2. 24.자, F에 대한 2021. 2. 25.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취지 추가적 변경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추가한 제2 선택적 청구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의 각 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 2 선택적 청구는 모두 C이 그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대가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는 측면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한다는 취지로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기초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사해행위취소 청구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K아파트의 매도대금이 C으로부터 피고에게 전달된 각 일시에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에 따른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중 2020. 8. 28. 원고가 배당받은 4,440,489원을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다.○ 원본:

150,000,000원

○ 2020. 8. 2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 배당금

: 75,964,126원[= 80,445,205원 {=150,000,000원 × 0.15 × (3+ 210/365),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80,404,615원 - 배당금 4,440,489원]

○ 2020. 8. 29.부터 변론종결일(2021. 7. 13.)까지의 지연손해금

: 19,643,330원{= 19,664,383원(=150,000,000원 × 0.15 × 319/365,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

○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 금액 합계

: 245,607,456원(= 150,000,000원 + 75,964,126원 + 19,643,330원)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C의 피고에 대한 증여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2019. 10. 10.자 48,000,000원 교부가 증여임을 자인하면서, ① 2019. 11. 4.자 150,000,000원 중 U에게 지급된 100,000,000원, Q에게 지급되었던 50,000,000원의 경우 C이 2019. 10. 24. U, Q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이후, U, Q이 2019. 11. 4. 다시 위 각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거나, C과 U, Q 사이에 각각 피고가 요구할 때 수증받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② 2019. 11. 7.자 30,000,000원 교부는 C의 부탁으로 이를 보관하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에 불과하며, ③ 2019. 11. 25.자 100,000,000원 교부는 C으로부터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 없이 차용한 것이어서 위 각 일자에 C이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과 피고가 부부 사이인 점, ② C은 재산명시명령이 있기 하루 전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K아파트를 J에게 처분하였고,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 중도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J에게 K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K아파트를 책임재산으로 파악하여 강제집행하는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일련의 조치로 보이는 점(C은 재산명시과정에서 재산명시명령 송달 이후 K아파트를 처분하였음에도 재산명시명령 송달 이전에 처분하였다고 재산목록을 허위 기재하였고, J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의 존재도 묵비하였다), ③ C이 K아파트를 J에게 매도한 다음 날 피고는 N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 중 상당 부분을 K아파트의 처분대금으로 마련하였는바, 피고가 N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결과적으로 C의 K아파트 처분 대가가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된 점, ④ 비록 2019. 11. 4.자 150,000,000원 지급의 경우 U, Q을 거쳐 피고에게 전달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돈의 출처와 현금화 목적, 피고와 AB이 함께 살 N아파트 매입에 사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C이 피고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19. 11. 7.자 30,000,000원 지급은 N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앞서 본 연속된 증여행위와 자금 출처가 같고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진바, 이 역시 피고에게 위 돈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⑥ 2019. 11. 25.자 100,000,000원 지급 역시 앞서 이루어진 K아파트 매입자금의 연쇄적인 이전의 일환인 데다가, 피고의 N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과 피고 사이의 2019. 10. 10.자 48,000,000원, 2019. 11. 4.자 150,000,000원, 2019. 11. 7.자 30,000,000원, 2019. 11. 25.자 100,000,000원의 각 금전 수수는, 위 각 돈이 피고의 N아파트 매수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 즉 증여계약에 기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C이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사해성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2019. 10. 10. 피고에게 48,000,000원을 증여할 당시 K아파트에 대한 매매 중도금 및 잔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2019. 11. 7. 30,000,000원을 증여할 당시에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매매 잔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증여 당시 피보전채권을 상회하는 적극재산이 있었던 이상 위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구체적 판단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C은 이 사건 매매 중도금 및 잔금 채권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① 피고와 C이 부부 사이인 점, ② 이 사건 각 증여 자금은 모두 C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K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마련된 점, ③ C은 J으로부터 K아파트의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순차 지급받았는데, 그 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피고에게 단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여한 점, ④ 이 사건 각 증여를 통해 피고에게 전달된 돈 대부분은 피고의 N아파트 매수자금, 즉 피고와 C의 거주지 마련 목적으로 사용되어 종국적으로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된 점, ⑤ C은 재산명시명령 전후로 K아파트의 매도를 결정하고, 실제 재산명시단계에서 매매대금 채권을 기재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 사건 각 증여는 전체적으로 C의 적극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원고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K아파트 처분대금을 순차적으로 피고에게 전달한 이 사건 각 증여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K아파트를 처분하고 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부를 각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K아파트 또는 위 각 단계에서 잔여 매매대금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2019. 10. 10.자, 2019. 11. 4.자, 2019. 11. 7.자 증여계약은 전부, 2019. 11. 25.자 증여계약은 원고의 잔존채권액인 17,607,456원(=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 245,607,456원 - 48,000,000원 - 150,000,000원 -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5,607,4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선택적 청구인 원고의 2019. 11. 16.자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신, 판사 이유진, 판사 이창환

별지

채권의 표시

채권자: C

채무자: J

채권의 내용: 채권자 C이 2019. 10. 9. 채무자 J과 하남시 K아파트 L호에 관하여 체결  
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 중 잔액 322,000,000  
원의 채권 끝.

